

한국과 미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 활동 비교*

김용호 | 인하대학교

| 논문요약 |

한국과 미국 의회가 2008-2009년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심의한 주요 법안을 분석한 결과 3가지 공통점(케인즈주의의 부활, 입법의 동조화, 강한 정당 투표 현상)과 2가지 차이점(입법 범주의 차이, 입법과정에서 신중성의 차이)을 발견하였다. 첫째, 양국의 주요 경제회생 법안이 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신용 경색 완화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케인즈주의 노선을 채택한 점이다. 둘째, 양국이 경제회생을 위해 매우 유사한 법안을 만들어가는 입법의 수렴 현상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금융안정기금과 구조조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 그리고 한국의 2009년 추경예산안과 미국 의회의 <청정에너지안보법>, <구제금융법안>, 그리고 <미국의 경제회생과 재투자법> 간에는 법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 면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다. 마지막으로 양국 의회의 경제회생법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보면 자유투표(cross-voting) 대신 강한 정당투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정당투표가 강했지만 미국의 경우 최근 심화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양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의 범주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미국 의회는 경제전반을 개혁하는 광범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편이지만 한국 국회의 경우 내수 진작과 금융기관 부실 대비 자금 조성 등에 국한되었다. 전자의 경우 자동차 산업구조조정,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건강보험제도 개혁, 금융 개혁 등 경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될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양국 의회의 또 다른 차이점은 미국은 하원에서 부결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어 다시 수정안을 채택하는 등 입법과정에서 신중하고, 사회 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입법과정에서 이런 노력을 발견하기 어렵다.

주제어 | 경제회생, 한국 국회, 미국 의회, 입법, 수렴, 미국 공화당, 미국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 이 논문은 필자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에 제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과 미국 의회의 초기 대응조치 비교』(2009년 12월)를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다.

I. 문제의 제기

이 연구는 2008~2009년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의회가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를 비교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 기간에 양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경제가 좋을 때와 달리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각국의 처방이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의회가 경제회생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수렴(convergence)보다 이질화(divergence)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양국이 겪는 경제위기의 양상이나 정치경제적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위기 극복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¹⁾ 더욱이 양국의 집권당이 추구하는 정책 노선이나 지지 기반이 다르거나 양국의 경제단체와 노조를 비롯한 여러 사회세력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일한 처방을 제시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각국 의회의 역할이 증대되는 경향이 발생하는 바, 한국과 미국의 경제회생을 위한 입법 활동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양국 의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활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를 실감하여 1차 “경기부양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2008년 1월부터, 한국의 경우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2009년 12월까지의 입법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양국에서 경제위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 2007년 2월 미국 최대의 주택융자 전문업체인 프레디 맥(Freddie Mac)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loan)을 더 이상 사들일 수 없다는 발표와 함께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당시 위기 인식이 부족하여 2008년 2월에 들어서야 경기부양법(Economic Stimulus Act of 2008)을 통과시켰다. 한편 한국의 경우 2008년 초부터 경제위기 관련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였

1) Peter Gourevitch, *Politics in Hard Times: Comparative Responses to International Economic Cris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pp.36-54.

으나 그 해 9월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 파산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면서 한국도 세계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로 2008~2009년 양국 의회의 경제회생관련 입법 활동을 대상으로 삼았다.

II. 미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 동향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와 110대 의회가 2007~8년에 걸쳐,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와 111대 의회가 2009년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활동 중에서 7개 주요법안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7개 법안을 시기 별로 보면 110대 의회의 4개 법안과 111대 의회의 3개 법안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7개 법안을 분야별로 보면 경제전반에 걸친 경기부양책이 2개(2008년 경기

<표 1> 제110대와 111대 미국 의회의 경제회생 관련 주요 법안

법안	법안 명칭과 분류 번호	발의자	주요 내용	하원 표결 일시	하원 표결 결과(찬성: 반대/상원 수정안)	상원 표결 일시	상원 표결 결과	대통령 서명 공포 일자
2008년 경기부양법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H.R. 5140)	Nancy Pelosi 하원의장	1,520억 달러의 세금 환급 조치	2008. 1.29	385: 35 (기권 10)/ 380: 34	2008. 2.7	81:16	2008. 2.13
주택시장 및 경기 회복법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 (H.R. 3221)	Nancy Pelosi 하원의장	1) 비우량주택담보대출 피해자 구제 2) 프레디 맥과 패니 메이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	2007. 8.4/ 2008. 7.26	241: 172	2008. 5.8	72:13	2008. 7.30
긴급경제안정법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H.R. 1424)	Henry Paulson 재무장관	7,000억 달러의 부실자산 경감프로그램(TARP) 설치	2008. 9.29/ 2008. 10.3	229:205 (F)/ 263:171 (P)	2008. 10.1	74:25	2008. 10.3

자동차 산업의 금융 및 구조 조정법	Auto Industry Financing and Restructuring Act (H.R,7321)	Mr. Frank of Massa- chusetts	자동차3사의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140억 달러 긴급 대여	2008. 12.10	237: 170(P)	상원에 서 필리 버스터 로 무산		
미국 경제 회생과 재투자법	American Economic Recovery and Reinvest- ment Act of 2009 (H,R,1)	David R. Obey (WI, D)	경기부양과 감세를 위한 7,872억 달러의 재정지출	2009. 1.28	246:183	2009. 2.10	60:38	2009. 2.17
미국 청정 에너지와 안보법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H,R,2454)	캘리포니아 민주당하원 의원 Henry Waxman/ 매사추세츠 민주당 하원 의원 Edward Markey	1)2020년까지 전력회사들이 전력수요의 20%를 재생 에너지로 충족 2)산업, 건물, 가전 분야의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준 의무화	2009. 6.26	219: 212(P)	계류중		
월가 개혁과 소비자 보호법	Wall Street Reform and Cosumer Protection Act (H,R,4173)	매사추세츠 하원의원 Frank Barney	1)금융안정위원회(FSC)를 설치해서 부실우려 금융회사 지정 및 해제 2)부실회사 처리를 위한 대형금융 기관의 1,500억 달러의 펀드 조성 3)금융소비자보호기구 (CFPA) 설립	2009. 12.11	223: 202(P)	계류중		

부양법, 2009년 미국경제회생 및 재투자법), 금융 관련 법안 3개(2008년 주택시
장안정 및 경기회복법, 2008년 긴급 경제안정법, 2009년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산업정책 관련 법안 2개(2008년 자동차산업 금융 및 구조조정
법, 2009년 미국 청정에너지와 에너지안보법) 등이다.

1. 미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 과정의 특징

2008~2009년에 걸친 미국 의회의 경제회생을 위한 입법 과정을 보면 110대 의회가 늦장대응을 하다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겪으면서 비상입법을 추진한 후 111대 의회가 본격적으로 경제회생 입법을 추진한 것을 알 수 있다.

1) 신자유주의 노선 아래 110대 의회의 늦장 대응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2007년에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초기에 늦장 대응을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거품에 따른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실이 급격히 진행되는 바람에 금융위기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7년에 미국 의회는 부동산과 금융 시장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나 입법에 성공하지 못하고 2008년 1월 들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였다. 하원은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8월에 〈주택시장 및 경기 회복법〉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은 1년 가까이 끌면서 2008년 5월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2008년 1월과 2월에 각각 하원과 상원이 감세 위주로 〈경기부양법(Economic Stimulus Act of 2008)〉을 통과시켰지만 그 규모나 효과가 매우 미미하였다.

비록 결과론이지만 미국 의회와 부시 행정부는 적어도 2007년에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2006년부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가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긴축통화 신용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loan)의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2월 미국 최대의 주택융자전문업체인 프레디 맥(Freddie Mac)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후 4월, 6월, 8월에 각각 미국 제2의 주택담보대출회사인 뉴센트리 파이낸셜(New Century Financial Corp.), 미국 5위의 투자은행 베어 스텐스(Bear Stearns), 아메리카 홈 인베스트먼트(America Home Investment) 등이 파산을 신청하거나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금융위기에 늦장 대응한 핵심적인 이유는 110대 의회와 부시 행정부가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랐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자율기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통화정책에 의존하였다. 2006년 중간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었지만 상원에서 양당이 동수를 이루는 가운데 공화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공화당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었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정부지원기업(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인 프레디 맥과 패니 메이(Fannie Mae)로부터 연방주택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이 최고 3,000억 달러까지²⁾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및 경기회복법>이 상원에서 거의 1년 동안 끝냈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2) 리먼 브러더스 사건 직후 비상 입법 추진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 보호 신청 직후 월가가 패닉 상태에 빠지자 부시 행정부는 폴슨(Henry Paulson) 재무장관을 앞장세워 연방정부가 민간금융기관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비상입법을 추진하였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자, 미국 의회는 금융 기관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부시 행정부가 요청한 소위 구제금융법안을 간신히 승인하였다.³⁾ 처음에 하원은 부시 행정부의 요청을 부결시켰으나 상원이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여 수정안을 통과시킨 후 하원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겨우 미국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았다. 상원의 새로운 조건은 주로 국민의 예금보호와 감세, 금융기관

2)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경제회생 및 재투자법>에서 6,000억 달러까지 증액한 것으로 알려짐. 김인준 (2009), p.75.

3)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긴급금융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이다.

규제 강화 등으로 예금 보호한도를 25만 달러로 인상하고,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금융감독 강화, 구제금융 수령기관의 CEO 보수 상한 설정 등이었다. 당시 미국은 대선과 총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의회는 표를 의식하는 가운데 월가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잠재우고 일반 국민의 금융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건을 붙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오바마와 매케인 후보가 대선 캠페인 일정을 중단하고 워싱턴 D.C.에 가서 부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으나 처음에 하원에서 부결되었는 바, 하원에서 이 법안이 부결된 후 금융위기가 심화되자 원안에 반대했던 57명의 하원의원(민주당 32명, 공화당 25명)이 수정안 표결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결과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 7천억 달러의 부실자산 회생 프로그램(TARP, 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이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실자산 처리 대신 금융기관의 자본 재확충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결과 부실자산 처리를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겨 두게 되었던 바, 앞으로 이 문제가 미국 경제 활성화의 최대 과제로 남아 있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진 후 발생한 부실자산 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였다.

3) 111대 의회 출범 후 본격적인 경제회생 입법 추진

부시 행정부 말기에 <긴급경제안정법> 등을 활용하여 GM과 Chrysler의 금융회사까지를 포함한 주요 금융기관에 대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져 들게 됨에 따라 2008년 11월 대선과 총선 직후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물론 제111대 미국 의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천명하였다. 2008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백악관은 물론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함으로써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 여대야소)가 등장함에 따라 111대 미국 의회는 경제회생 입법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오바마대통령과 민주당 의회지도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매우 신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오고 있다. 오바마대통령 취임 1개월 만에 대규모 경기부양법

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였는 바, 이는 미국 의정사상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다. 민주당 의회는 2009년에 경기부양법 외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법, 의료개혁법, 금융개혁법 등을 추진해 나오고 있다.

4) 하원의 신속한 입법과 상원의 신중한 입법 태도

미국 하원은 2009년 6월과 12월에 각각 <청정에너지와 안보법>, <월가 개혁과 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키는 등 매우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했으나 상원은 이들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에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서로 다른 내용의 의료개혁법안이 올해 3월에 하원을 통과하여 입법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시오도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이래 약 100년간 미국 사회의 숙원이었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더욱이 민주당은 올해 초에 매세추세츠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여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방지할 수 있는 60석에 1석이 모자라는 바람에 하원에서 이 법안의 통과가 절실하였다. 오바마와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설득이 주효하여 이 법안의 통과에 성공하였다.

이 법안을 통해 그동안 의료보험이 없었던 3천여 명의 미국민들이 새로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 법안의 통과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하원의 공화당 의원은 1명도 찬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처럼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의 정당투표가 강하여 공화-민주당 간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공화당은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후 이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서 양당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으로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된 <미국 청정에너지와 안보법>과 <금융개혁과 소비자 보호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여전히 정치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2. 미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의 내용상 특징

2008년 이후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생 관련 입법의 내용상 특징을 살펴보면 케인즈주의에 입각하여 광범위한 경제개혁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신자유주의의 퇴조와 케인즈주의의 부활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에게 은행가, 기업가의 역할을 부여하는 입법을 단행함으로써 지난 20여 년간 미국과 세계경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노선이 약화되었다.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법안(긴급경제안정법)은 연방정부가 월가를 대신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은행의 역할을 맡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연방정부가 GM과 Chrysler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후 경영진을 교체하여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과거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정부의 경제개입이 일어나고 있다.

111대 의회 출범 직후 입법한 <미국경제회복과 재투자법>은 연방정부가 7,87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유동성 공급과 내수 진작을 도모하는 것으로 케인즈주의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시설의 현대화, 에너지 자립 강화, 교육 기회 확대, 저렴한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투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7,870억 달러 중 약 25%에 해당하는 2,000억 달러 이상의 감세 조항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하원에서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포함하는 <청정에너지안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은 첫째, 탄소거래제(cap and trade program) 도입, 둘째, 태양력,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 마지막으로 자동차, 빌딩, 산업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이다. 특기할 사항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연방정부가 특정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투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 법안은 이처

럼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중상주의적(mercantilistic) 성향을 보여 주고 있다. 부시행정부와 달리 2009년 출범한 민주당 의회와 오바마행정부는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미국의 신성장동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미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 감소 등을 노리고 있다. 그런데 하원은 이 법안을 찬성 219, 반대 212로 겨우 통과시킨 후 상원에 제출하였으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 이유는 2010년 1월에 실시된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함으로써 종래 60석의 민주당 의석이 59석으로 줄어들었는데, 60석이 되어야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광범위한 경제 개혁 입법 추진

미국 의회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최근 하원에서 입법에 성공한 의료개혁법에 이어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에너지산업 관련법과 월가 개혁법이 상원에서 통과되는 경우 현재 구조조정 중인 자동차 산업과 함께 에너지산업, 금융산업, 의료산업 등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여 미국의 정치경제질서가 새롭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장을 중시하고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경향이 강한 미국 사회에서 민주당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가 개혁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수록 미국 국민들의 지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개혁입법의 장래를 낙관할 수 없다. 비록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가 의료개혁입법에 성공하였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시장주의자들과 반정치 성향의 유권자들이 증세와 정부 개입에 반대하는 새로운 방식의 저항 운동, 즉 Tea Party Protest Movement를 전개하고 있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이 월가에서 비롯되었지만 미국에서는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와 달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강한 반면 정부의 경제개입을 싫어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문화가 매우 강한 편이다.

III. 한국 국회의 경제회생 입법 동향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한국경제가 위기에 봉착하자, 한국 국회도 이명박 행정부와 함께 2008년 정기국회부터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입법 사례 9개를 분석하여 한미 간의 경제회생 입법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9개 법안 중에서 경제전반에 걸친 경기부양 관련 법안은 2개(2009년도 정기 예산 수정안, 2009년 4월의 추가경정예산), 독과점 규제 관련 법안은 1개(독점규제 및 공정거

<표 2> 한국 국회의 경제회생 관련 주요 법안

법안	제안 시기	발의자	주요 내용	본회의 통과 일시	표결 결과
2009년 정기예산안 수정안	2008. 11.3	행정부	10조 원의 경기부양책	2009. 12.13	총 298명/ 찬성 18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불참 69명/ 출장 3명/ 결석 38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2009. 1.7	김영신, 이석현, 행정부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2009. 3.3	총 295명/ 찬성 167명/ 반대 60명/ 기권 3명/ 불참 43명/ 출장 3명/ 청가 4명/ 결석 15명
2009년 추가경정 예산안	2009. 3.30	행정부	28조 원의 경기부양책	2009. 4.29	총 294명/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6명/ 불참 95명/ 청가 11명/ 결석 6명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 자산관리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9. 4.1	행정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업구조 조정 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0조 원의 구조조정기금 설치	2009. 4.29	총 294명/ 찬성 162명/ 반대 9명/ 기권 3명/ 불참 103명/ 청가 11명/ 결석 6명
농어촌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2009. 2.2	황영철 외 10인	부채 상환기간을 기존의 2009년에서 2013년으로 연장	2009. 4.29	총 294명/ 찬성 202명/ 기권 3명/ 불참 72명/ 청가 11명/ 결석 6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9. 4.1	행정부, 김효석	금융기관의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 지원을 위해 20조 원의 금융안정기금을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	2009. 4.30	총 299명/ 찬성 169명/ 반대 44명/ 기권 9명/ 불참 50명/ 청가 6명/ 결석 21명
긴급복지 지원법	2009. 4.27	곽정숙, 최영희, 손순미, 행정부 등	1) 긴급지원기간을 기존의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2)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기간을 1개월 이내, 1회 연장하던 것을 1개월씩 2회 연장 가능하도록 조치 3) 긴급지원 대상에 교육을 포함, 초·중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	2009. 4.30	총 299명/ 찬성 215명/ 불참 57명/ 청가 6명/ 결석 21명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	2009. 4.21	홍일표, 최철국, 김재윤, 홍희덕	공공기관에서 미취업청년 취업 촉진하는 기존 법률 2013.12.31까지로 연장	2009. 9.16	총 291명/ 찬성 226명/ 반대 1명/ 기권 1명/ 불참 39명/ 청가 7명/ 결석 17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09. 2.28	김성곤, 배은희, 이인기, 행정부	1)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2)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3) 녹색경제 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촉진 4) 녹색산업 투자회사 설립 5) 녹색 국토 조성	2009. 12.29	

주: 본회의의 통과 일자 순서대로 정리한 것임

래법 개정안 등)이고, 고용 및 복지 관련 법안은 2개(2008년 12월의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 2009년 4월의 긴급복지지원법)이고, 산업관련 법안은 2개(농어촌 부채 경감을 위한 개정법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며, 금융 관련 법안은 2개(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1. 한국 국회의 경제회생 입법 과정의 특징

2008년 9월 이후 한국 국회의 경제회생 입법과정을 분석해 보면 신속한 초기 대응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행정부 주도의 입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1) 신속한 초기 대응, 그러나 초기에 위기의 심각성 저평가

한국의 경우 2008년 10월에 외국자본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등으로 인해 심각한 달러 부족현상과 함께 환율이 폭등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여 2009년도 정기예산안을 제출한지 1개월만인 11월 초에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대응을 하였다. 행정부가 차기연도 예산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후 심의과정에서 정기예산의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것이 의정사상 3번째로서 1970년의 경우 자연 재해, 1980년은 국회 해산에 따른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2008년 11월경에는 이명박 행정부가 2009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1% 낮추어 3.8~4.2%를 기준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미국발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였다. 한국 정부는 2009년 초에 수출이 급감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표 3> 2009년 3월 추경예산안의 경제 전망

	2008.11. 전망	2008.12. 전망	2009.2. 전망
경제성장률 (%)	4% 내외	3% 내외	-2% 내외
취업자 증감 (만 명)	20만 명 이상 증가	10만 명 이상 증가	20만 명 내외 감소
수출 증가율 (%)	9% 내외	0% 내외	-15% 내외

*출처: 기획재정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9/3);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09/4), p. 3에서 재인용

2) 행정부 주도의 입법 활동과 국회의 과잉 대응

한국 국회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제회생 입법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행정부가 입법을 주도하는 배경에는 국회가 행정

〈표 4〉 경제회생 관련 주요 공공자금 펀드

구분	규모	목적	운영 주체	지원 방식	설치 근거	사용액*
채권시장 안정펀드	10조 원	신용경색 완화	한국은행	우량기업의 회사채 매입	2008.11. 금융위원회 발표	3조 7,777억 원
은행자본 확충펀드	20조 원	실물경제 지원	민관 합동의 운영위원회 (한국은행 10조, 산업은행 2조, 민간투자자 8조)	신종 자본 증권 매입	2009.2 금융위원회 발표	3조 9,560억 원
금융안정 기금	20조 원	금융 부실화 예방	정책금융공사	금융사 출자	2009.4.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상
구조조정 기금	40조 원	기업구조 조정 지원, 금융권의 부실채권 매입	산업은행 등	구조조정 기업 자산 혹은 지분 매입	2009.4.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8,146억 원**
예금보험 기금	5조 원	부실금융사 정리	예금보험공사	금융사 출자 및 출연	기존의 <예금자보호법>	미상

주: *사용액은 2008년 9월 16일~2009년 8월 17일까지임

출처: 신동진, “금융안정화대책의 정책 효과와 출구전략의 방향,”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 분석」 42호 (2009.11), p.19

**구조조정기금의 경우 2009년 10월 말까지

출처: 이데일리, “내년 구조조정기금 운용규모 10조로 축소,” <http://www.edaily.co.kr/news/Finance/NewRead> (검색일: 2009.12.17)

부와 법률제안권을 공유하고 있고, 또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서 재정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경제정책 수립에 “정치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 등이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행정부가 제안한 입법안에 대해 국회가 활발한 토론이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다” 입법 현상이 발생하였는 바, 예를 들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 마련한 기금들이 거의 모두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40조 원의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하는 〈금융기관 부실 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에서 국회는 행정부가 제안한 기금의 규모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과시킨 결과 그동안 1조 원도 사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9년 4월에 이 법을 통과시킨 후 2009년 10월 말까지 집행한 구조조정기금의 내역을 보면 금융기관에 6,164억 원, 비금융기관에 1,982억 원 등 총 8,146억 원을 사용하였다.⁴⁾ 따라서 1차연도의 20조 원 중 4%에 불과하다. 연말까지 추가 집행 예상액인 4조 원을 합하더라도 약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하여 2009년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정무위는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었던 2차연도분 구조조정기금 20조 원을 10조 원으로 삭감하였다.

2. 한국 국회의 경제회생 입법의 내용상의 특징

2008~2009년 한국 국회의 경제회생 입법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신자유주의가 퇴조한 가운데 경기부양 재정 지출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1) 신자유주의의 상대적 퇴조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과 총선에서 신자유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과 함께 747(7%경제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대 경제강국)을 공약했으나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미국처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금융권 부실 방지와 내수 진작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 결과 자신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후퇴시켰다. 한나라당은 미국의 공화당처럼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였으나 이번 위기로 인해 미국의 민주당처럼 케인즈 방식의 수요 창출에 주력하

4) 이태일리, “내년 구조조정기금 운용규모 10조로 축소,” <http://www.edaily.co.kr/news/Finance/NewRead> (검색일: 2009.12.17).

는 경제회생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회생 입법 속에 감세 조항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신자유주의 노선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2009년 4월의 추경예산안 28조 원 중 11조 원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이다.

2) 경기부양책 중 중소기업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표 5〉에서 한국과 G20의 경기부양책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체 경기부양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는데, 그 이유는 한국정부가 2009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에 대해 1년간 자동 연장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다른 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출 연장 비율이 75% 정도가 최고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 100% 대출 연장을 해 주었다.⁵⁾ 따라서 한국의 경우 모든 중소

〈표 5〉 한국과 G20국가의 경기부양책 구성 비교 (%)

	G20	한국
재정지출 분야	77	73
사회기반시설	32	28
중소기업 지원	1	21
사회안전망 구축	20	22
주택 지원	5	0
전략적 분야	4	0
기타 재정지출	16	2
세입 분야	23	27
개인소득세	8	6
간접세	4	3
법인세	10	16
기타 세입	1	1

*출처: IMF, *Country Report: Republic of Korea*, No.09/262 (August 2009), p. 13

5) IMF, *Country Report: Republic of Korea*, No.09/262 (August 2009), p. 13.

기업이 대출연장을 받기 때문에 이 중에서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도 1년간 생명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1년 후에 대출 상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 다시 연장을 요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IMF도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100% 자동연장에 대해 경제위기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이러한 “과행적인 정책(distortionary policy)”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교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⁶⁾

IV. 양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 비교

이제 한국과 미국 의회가 경제위기에 봉착한 시점을 전후로 한 입법 환경을 비교한 후 양국 의회의 입법 과정과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표 6〉 한국과 미국 의회의 경제 회생 입법 비교

구분	분야	변수	주요 지표	한국	미국
입 법 환 경	경제 상황	위기 발생 당시의 경제 상황	GDP	약 9,700억 달러(13위)	약 14조 달러(1위)
			수출의존도	38.3	8.4
			재정적자	약 -3.2%	약 -10%
			대외수지	흑자	적자
	경제 환경	경제 위기의 양상	금융 위기	초기에 일시적 신용경색	매우 심각
			부동산 시장의 위기	거의 없음	매우 심각
			외환 위기	초기에 일시적	없음
			실물경제의 위기	회복세	침체 지속
			자동차 산업의 위기	없음	심각

6) IMF (August 2009).

	정치 환경	대통령-의회 관계	분점정부/단점정부	단점정부	분점정부에서 단점정부로
		의회 구조	양원제/단원제	단원제	양원제
			법률 제안권	행정부와 공유	의회의 고유 권한
		재정 권한	세입권과 세출승인권	세입권과 세출권	
입법 동향	입법의 내용		주로 케인즈주의에 신자유주의와 신중상주의 적 요소 가미	케인즈주의의 부활, 신자유주의와 신중상주의 등이 혼재	
	입법의 범위		주로 내수 진작과 금융 및 기업 부실에 대비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 입법	
	입법 과정		행정부 주도 속에 국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	행정부와 의회지도자의 주도 아래 신중한 입법 추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한미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 환경 비교

양국 의회가 본격적으로 경제 회생 입법을 추진한 시기를 중심으로 양국의 입법 환경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양국이 모두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와 비교해 볼 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화가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할 수 있다.⁷⁾ 한국의 경우 2007년 12월 대선을 통해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집권한 후 2008년 총선을 통해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민주화 이후 선거를 통해 두 번째로 단점정부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보면 여당 내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입법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소수당이 비정상적인 방법으

7) 한국의 언론은 흔히 단점정부를 분점정부를 각각 “여대야소 국회”, “여소야대 국회”라고 부른다.

로 입법을 저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점정부 상황에서도 입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야당은 민생 관련 법안을 정치적 쟁점 법안과 연계시켜 후자에 대한 여당의 양보가 없으면 민생 관련 입법에도 협조하지 않는 태도가 남아 있었다. 이번에도 행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한국판 구제금융법안인 금융안정기금 조성법과 구조조정기금 조성 등을 위한 민생 관련 입법안을 2009년 3월 말에 국회에 회부했으나 여야가 미디어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법안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경제위기 초기단계에는 분점정부였으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는 단점정부였다. 사실 2008년 미국 대선과 총선에서 경제위기가 단점정부의 등장에 기여했다. 2004년 재선에 성공한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은 200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함으로써 분점정부가 성립되었으나 2008년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함으로써 단점정부가 등장하였다. 돌이켜 보면 2007년 이후 미국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으나 부시 행정부나 의회는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07년 8월에 하원에서 통과된 〈주택시장 및 경기회복법〉이 상원에서 2008년 5월에 통과되어 거의 1년이 지난 7월에 양원 단일안이 마련되는 등 입법 지연으로 경제회생법안의 효과가 약해졌다. 한편 2008년 2월의 〈경기부양법〉은 감세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기부양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2008년 9월 부시 행정부의 폴슨 재무장관이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발 금융위기는 일시적으로 견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⁸⁾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집권당인 공화당이 선거에 승리할 수 없었다. 결국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고 민주당이 오랜만에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8)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이 올바른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폴슨 재무장관 등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앨런 블라인더 교수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규모가 작은 베어스턴스는 M&A를 통해 구제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큰 리먼 브러더스는 도산하도록 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충격에 대한 평가를 잘못한 결과라고 비판한다. 김인준 (2009), p. 73.

지기 시작했고, 특히 오바마 취임 후 1개월 만에 대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양국의 또 다른 공통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의회보다 행정부와 대통령의 리더십이 주도한 점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의회의 권한이나 능력이 행정부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입법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의 경우 이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도 대통령과 행정부가 경제회생 관련 입법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으로 실물경제에 밝은 점이 효과적인 경제회생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상당히 기여한 결과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회복세가 가장 빠르다.

한편 미국의 경우 한국 국회와 달리 의회가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내정책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한 경우가 있으나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돋보였다. 예를 들면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와 공급위주의 경제정책은 공화당 하원의원 캠프(Jack Kemp)가 1970년대 말에 주창한 것이었다. 그는 〈1981년 경제회생을 위한 조세법(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을 만들어 감세정책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의회보다 대통령이 입법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세계대공황시기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주도 아래 경기부양책,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건강보험 개혁, 금융개혁 등이 추진되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당시, 한미 의회의 입법 환경을 보면 양국 간에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미국 의회의 권한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단적인 예로 양국 간의 재정 권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한국 국회는 세입권만을 가지고 있고 세출권은 승인권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1년치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추가경정예산 외에는 행정부가 국회의 예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의회는 세입권은 물론 세출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예산 중에서 약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경상비와 계속사업비 외에는 일일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번 위기상황에서 부시 행정부의 폴슨 재무장관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후 구제금융법안의 하원 통과를 위해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무릎을 꿇고 애소하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다. 이처럼 미국 의회는 한국 국

회와 달리 세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회생정책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번 위기 극복과정에서도 미국 하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에 성공하였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양국 의회가 당면한 입법 환경의 경제적 측면을 보면 차이점이 많다. 무엇보다 양국 경제의 규모나 국제적 위상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양국의 GDP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14조 달러 규모의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인 반면 한국은 9천억 달러 정도로 세계경제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큰 미국이 한국에 비해 경제회생정책을 입안하는 데 자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국이 모두 개방적 자유무역국가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미국 하원이 〈미국 경제회복과 재투자법(American Economic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통과시키면서 “Buy American” 조항을 포함시키자 세계 각국이 반발하였다. 결국 미국이 이 조항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보류하였다.⁹⁾ 이처럼 양국 경제의 대외 의존성이 한미 양국의 경제회생 관련 입법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취약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미국의 수출의존도는 8.4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38.3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¹⁰⁾ 후자는 이번 위기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였다.

양국 경제의 규모와 대외경제의존도 외에 정부의 재정 상태가 경제회생 법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한국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높았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정책을 마련하기 쉬웠다. 그동안 미국은 부시 정부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 비용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2009년 10월 1일에 시작된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1조 5천억 달

9) 미국 하원이 경기부양법에 의한 공공사업에서는 미국산 철강 및 철강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 외국의 반발이 심해졌다. 이에 미국 상원은 미국과 이미 국제조달협정을 체결한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의 나라에는 적용을 유보하고 이후 새로운 조달협정을 체결하는 나라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정인교, 『신보호무역주의』(서울경제경영, 2009), p. 118, 각주 5.

10) “수출액을 GDP로 나눈 값,” 통계청, KOSIS(<http://kosis.kr/>).

리로 예상되어 GDP의 1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¹¹⁾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우 IMF 보고서에 의하면 재정적자가 2009년에 -3.2%, 2010년에 -4.7%까지 증가한 후 2014년에는 균형을 맞출 것으로 전망하였는 바,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높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쉬웠다.¹²⁾

이러한 경제위기 발생 이전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못지않게 경제위기의 양상이 양국 의회의 경제회생 관련 입법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양국이 겪은 경제위기의 본질과 양상이 매우 다르다. 이번 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의 월가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는 금융시스템은 물론 미국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지만 한국의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외환위기에 이어 수출부진과 내수경기 침체를 겪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 입법이 필요한 반면 후자의 경우 은행과 기업의 구조조정보다 경기부양 위주의 입법에 치중하였다.

2. 한미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 동향 비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 의회의 입법 동향을 보면 3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주로 케인즈주의에 입각하여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demand stimulus) 위주의 입법; 2) 양국 의회의 입법 수렴 현상; 3) 의회내 강한 정당투표 현상. 이번 위기에 봉착하기 이전에 미국은 작은 정부, 기업의 창의성 존중, 국가의 경제 개입 최소화를 위한 탈규제, 감세, 민영화, 자유무역, 자본시장 개방 등을 포함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였다. 특히 레이건 행정부가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미국경제를 회생시킨 이후 이러한 정책을 전세계적으로 강조하였다.¹³⁾ 그러나 미국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

11) 권순우·신창목 외, 『SERI 전망 2010』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9).

12) IMF, *Country Report: Republic of Korea*, No.09/262 (August 2009).

13)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경제위기 극복 방식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Peter Gourevitch, *Politics in Hard Times: Comparative Responses to International Economic Cris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의 노선을 후퇴시키고 케인즈주의에 입각하여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힘쓰는 것은 물론 연방정부에게 은행가나 기업가 역할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라 비우량 주택담보대출과 파생상품은 물론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였으므로 당연히 정부의 경제개입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으로 인해 체 구실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연방중앙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의 역할을 떠맡아 엄청난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더욱이 자동차 3사가 위기에 처하여 결국 GM과 Chrysler가 파산보호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경영진을 임명하여 기업가의 역할도 떠맡았다. 이제까지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친 경우가 드물었는데, 이번에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의 지지를 얻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고, 의료보험이 없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시장을 매우 중시하는 전통을 가진 미국에서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공화당 우파들은 오바마와 민주당을 “사회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한 것을 보면 이런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국회도 이명박 정부와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과정에서 미국과 거의 비슷한 케인즈식의 정책 노선을 추진하였다. 28조 원의 경기부양책, 20조 원의 금융안정기금 조성, 40조 원의 구조조정기금 조성 등을 위한 입법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의 경우 과거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이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경제 개입에 대해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선 기간에 주로 신자유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감세, 민영화, 탈규제 등을 약속하였으나 이번 위기로 인해 일부 정책을 후퇴시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을 연기한 것이다. 또 대선 기간의 공약 747(7% 경제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대 경제강국)을 실현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가 경제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경기부양책에 감세 등을 포함시킨 것을 고려해 볼 때 여전히 신자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7〉 2008~2009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입법 수렴 현상

구분	한국	미국
금융기관 지원 및 구조 조정 기금 조성을 위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긴급 경제안정법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청정에너지 안보법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경기부양을 위한 입법	2008년 12월 정기에산수정안과 2009년 4월 추경예산안	미국의 경제회생과 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양국 의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동향에서 두 번째로 지적할 공통점은 양국 의회의 입법 수렴(convergence)현상이다.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28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추경예산안의 내용이 〈미국의 경제회생과 재투자법(American Economic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나타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 정책과 거의 유사하다. 또 한국 국회가 2009년 4월에 통과시킨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마련된 20조 원의 금융안정 기금과 40조 원의 구조조정기금은 부시 행정부시절에 입법된 7,000억 달러의 〈긴급 경제안정법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 국회가 지난 연말에 통과시킨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청정에너지안보법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의 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한미 양국 의회의 이러한 입법 수렴 현상은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초기의 예상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경제위기 발생 초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수렴(convergence)보다 이질화(divergence)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경제정책의 선택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경제회생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기업과 노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서로 다른 처방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내 시장 위주의 기업은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선호할 것이지만 해외 시장에 의존하는 기업은 이러한 정책을 반대할 것이다. 또 새로운 산업에 투자한 기업은 국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중상주의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구조, 산업구조, 노사관계, 경제적 대외의존성 등에 따라 각국의 경제회생정책이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미는 물론 거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정책의 수렴 내지 수렴 현상이 나타났다.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통한 국내 수요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나선 것이다. 일본의 아소 타로 자민당정권도 정부 부채가 GDP의 200%에 육박하지만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채택하였다.¹⁴⁾ 국내 인구가 400만 명에 불과한 아일랜드만이 국내 시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지 않은 극소수의 국가에 속한다. 그럼 이런 입법 수렴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필자의 가설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에 봉착하여 각국이 정책 공조 없이 보호 무역주의나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점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부시 행정부는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확산되자 즉각 G20 정상회의를 소집하여 정책 공조를 도모하였다. 부시 대통령시절인 2008년 11월, 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제1회 G20 정상회의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개최된 2차례의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호 무역주의의 등장을 막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 공조를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4) 김용호,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응: 한국과 일본의 경제회생정책 비교,” 인하대 정석물류통상연구원-외교안보연구원 공동주최, 「G20와 동아시아」세미나 발표 논문, 2009년 12월 2일.

특히 한국의 경우 국제공조 덕택에 환율 안정에 성공하였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한국은 해외자본의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달러 부족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10월과 11월에 미국, 중국, 일본과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 협정을 체결하여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제 공조 분위기로 말미암아 한미 의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G20에서 합의된 정책을 입법하는 데 동조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회가 G20 합의사항과 다른 정책노선을 추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본다.

한미 의회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마지막 공통점은 양국 의회의 경제회생 관련 법안 표결에서 정당투표현상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정당 투표현상은 매우 오래된 관행이지만 미국의 경우 의회내 강한 정당투표 현상은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정치현상이다. 한국 국회 운영은 거의 전적으로 원내 교섭단체간의 합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각 정당의 원내대표단이 막강한 파워를 행사한다. 따라서 법안 표결을 비롯하여 원내 활동에 있어서 개별 국회의원들은 자율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정당을 넘어서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자유투표(cross-voting)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¹⁵⁾ 이와 달리 미국 의회는 소속정당에 관계 없이 자유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정당투표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 분점정부 상황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지지를 얻어 입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당내 중도파가 있어서 양당의 중도파들이 정당 간의 합의를 유도해 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 정당 간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여 초당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배경에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미국의 공화당을 장악하고, 민주당 노선에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다.¹⁶⁾ 공화당 우파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낙태에 대한 무조건 반대와 동성결혼 불법을 기

15) 최근 동아일보 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정당투표율이 17대의 67.7%에서 18대에 들어와 76.4%로 증가하였다. 『동아일보』, 2009년 12월 16일, 1면.

16) Michael Grunwald, "Is the Party Over?" *Time* (May 18, 2009), pp. 22-27.

준으로 평가하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매케인(John McCain)이 강간을 비롯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 강경 우파들은 매케인을 “공화당 후보가 아니라”고 공격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취임 후 경제회생정책을 추진하면서 의회 내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서 입법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제안한 경제회생법안에 동조하는 하원의 공화당 의원을 찾기 힘들었다. 다만 상원 공화당의원 중에서 진보적인 3명이 수시로 오바마와 민주당의 법안을 지지하여 법안 통과에 기여하였다.¹⁷⁾

이제 양국 의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타난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가장 큰 차이점은 양국 의회의 입법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 의회는 오바마 행정부와 함께 미국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 국회는 주로 금융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한 조치와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입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양국이 겪은 이번 경제위기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이번 위기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거의 붕괴되고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실물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 경제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수출 부진과 내수 경기 침체를 겪었으나 경제의 펀더멘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2008년 가을부터 <긴급경제안정법>에 이어 <미국 경제회생과 재투자법> 외에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법>, <청정에너지안보법>, <월가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의료보험개혁법> 등을 추진해 나오고 있다.¹⁸⁾ 비록 자동차산업 구조조정법은 통과되지 못하였고, 청정에너지 안보법과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등은 하원에서 통과된 후 상원에서 심의중이며 의료보험개혁법은 하원에서 단일

17)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법안에 수시로 동조하는 상원의 진보 성향의 공화당 의원은 Susan Collins(메인주), Olympia Snowe(메인주), Arlen Specter(펜실베이니아주) 등인데, Arlen Specter는 2009년 4월에 당적을 민주당으로 옮겼다.

18) 김용호,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회생정책에 대한 정치적 분석,” 미발표 논문, 2009년 6월.

법안을 만들어 냈다. 앞으로 다른 경제회생 관련 법안들이 상원에서 입법에 성공하는 경우 미국 경제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제금융법안을 활용하여 GM과 Chrysler의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들 법안들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에너지 산업, 의료산업, 금융산업 등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¹⁹⁾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 국회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내수 진작, 금융기관 부실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비한 금융안정기금과 구조조정기금 등을 조성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지난 6개월간 이들 기금의 집행현황을 보면 매우 미미한데, 그 이유는 예상과 달리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금의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기금의 경우 1차 연도분 20조 원 중 지금까지 1조 원에 못미치는 금액을 집행했고, 연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집행액을 고려하더라도 5조 원 미만이어서 겨우 4분의 1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는 내년도 기금조성액 20조 원을 10조 원으로 삭감하였다. 이처럼 한국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산업이나 금융을 비롯한 경제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위한 입법은 거의 없고, 주로 유동성 공급이나 내수 진작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의 입법과정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 입법이 매우 신중한 편이고, 한국의 경우 입법과정이 매우 부실한 편이라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상·하원 양원제의 장점을 살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원에서 다시 심의된 후 상하원이 서로 절충하여 최종 법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입법과정이 매우 신중한 편이다. 예를 들면 2008년 10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매우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원에서 부결된 구제금융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어 다시 심의한 결과 수정안이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외에도 하원에서 통과된 〈청정에너지안보법〉,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 등이 상원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처럼 미국 의회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19) 김용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장래,” 미발표 논문, 2009년 12월 14일.

편인데 비해 한국 국회는 충분한 토론이나 심의가 부족한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되었으나 금융안정기금과 구조조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들의 경우 엄청난 정부 부채가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인 찬반 토론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야당에서 기금 사용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지적 외에 왜 이런 액수의 기금이 필요한지, 또 기금 사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부족하였다. 미국 의회의 신중한 입법과정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입법과정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부실한지를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외 9개 부처. 2008.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2008/11/3).
- 기획재정부. 2008. “경제난국 극복과 지방 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방안: 09년 수정예산·기금안.” (2008/11).
- _____. 2009.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9/3).
- _____. 2009.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제도약 예산: 2009년 예산·기금안 주요 내용.” (2009/9/24).
- 김선빈 외. 2009. 『상생의 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 김인준. 2009. 『대한민국, 경제학에게 길을 묻다』. 서울: 중앙Books.
- 김용호. 2009.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회생정책에 대한 정치적 분석.” 미발표 논문, 6월.
- _____. 2009.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응: 한국과 일본의 경제 회생정책 비교.” 인하대 정석물류통상연구원-외교안보연구원 공동주최. 「G20와 동아시아」 세미나 발표 논문. 12월 2일.
- _____. 2009.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미국의 장래.” 미발표 논문. 12월 14일.
- 김종만. 2009. “미국 고용시장 회복 징후, 경기 회복 지속 기대.” 『Issue Briefing』. 국제금융센터 (2009/12/7).
- _____. 2009. “미 상원 민주당 금융감독 체제 개혁안의 주요 내용.” 『Issue Briefing』. 국제금융센터 (2009/11/12).
- 국회예산정책처. 2008. 『2009년도 예산안 쟁점 분석: 11.7 제출 수정안 포함』. 국회 (2008/11/19).
- _____. 2009.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 (2009/4).
- 권순우·신창목 외. 2009. 『SERI 전망 2010』.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 2009. 『2010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 (요약)』 (2009/12).
- 손봉숙. 2008. 『국회를 바꾸고 싶다: 이론과 현장이 따로 가는 한국정치』. 서울: 중앙Books.
- 유용조. 2009. “경제위기에 대한 한국과 미국 입법부의 대응.” 『의정연구』 제15권 1호(통권 제27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정인교. 2009. 『신보호무역주의』. 서울경제경영.
- 지병문. 2009. 『국회 그리고 한국의 정치: 정치학 교수의 의정 활동 이야기』. 서울: 오름.
- 한인택. 2009. “금융위기이후 미 의회의 입법 동향.” 『주요국제문제분석』. No.2009-14 외교

안보연구원 (2009/5/28).

- 현대경제연구원. 2009. “미국 금융 불안 진단과 시사점: 미국 경기 빠른 회복 힘들다.” 『경제주평: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09-48(통권 377호). (2009/12/4).
- _____. 2009. “글로벌 임밸런스 지속의 파급 영향: 경제위기 후 세계경제 5대 변화 전망.” 『경제주평: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09-47(통권 376호). (2009/11/27).

『동아일보』, 2009년 12월 16일.

_____, 2009년 12월 17일.

『문화일보』, 2009년 4월 23일.

『아시아경제』, 2009년 2월 25일.

『이데일리』, “내년 구조조정기금 운용규모 10조로 축소,” <http://www.edaily.co.kr/news/Finance/NewRead> (검색일: 2009.12.17).

『중앙일보』, “조셉 스티글리츠,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 없었다.’” 2009년 12월 17일.

통계청, KOSIS (<http://kosis.kr/>).

『프레시안』, 2008년 5월 26일.

『한겨레신문』, 2008년 3월 17일.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2009. “The Financial Crisis: A Timeline of Events and Policy Actions,” <http://timeline.stlouisfed.org> (검색일: 2009.11.20).

Gourevitch, Peter. 1986. *Politics in Hard Times: Comparative Responses to International Economic Cris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Grunwald, Michael. “Is the Party Over?” *Time* (2009/5/18).

IMF. 2009. *Country Report: Republic of Korea*, No.09/262 (August 2009).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China overtaking US as the biggest market.” 2009년 12월 10일, 1면.

Wikipedia. 2009.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http://en.wikipedia.org/wiki/Troubled_Assets_Relief_Program (검색일: 2009.11.18).

원고접수일: 2010.03.09

심사완료일: 2010.03.23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Recent Legislative Activities for the Economic Recovery between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and the United States Congress

Kim, Yong-Ho | Inha University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overcoming their 2008~2009 economic crisis. Comparing the major economic recovery acts of the two countries, the author finds out three commonalities and two differences. Both countries basically adopted the Keynesian solutions such as demand stimulus packages through huge government spending for getting out of the recent economic crisis. In addition, the two countries introduced very similar legislative acts in the field of the government's bailout measures for troubled financial institutions, carbon dioxide reduction and new renewable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projects, as well as government's demand stimulus packages. In legislating the economic recovery acts, the two countries also demonstrated strong partisan voting pattern.

The scope of the economic recovery acts initiated by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and the U.S. Congress is quite different mainly because of the different range of damages brought by the recent economic crisis. The final differe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that the former's legislative body has still been less thoughtful and effective than the latter's in carrying out their legislative activities for the economic recovery.

Key Words | Economic Recovery,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U.S. Congress, Democratic Party(U.S.), Republican Party (U.S.), Convergence, Legislation, Barack Obama